

안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명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1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. 19.
발 의 자 : 한명훈 의원 외 19 명

1. 개정이유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(안 제3조의2)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1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5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4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7. 입법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부서의견 : 붙임6

불임1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.
②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한명훈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4)

불임2 신구조문대비표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 <p>제4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출자 ·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의2(출자 · 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는 출자 · 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출자 · 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4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<u>시장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